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Promoting Efficiency in
Financial Institutions)

閔 庚 駿 *

目 次

I. 序 論	2. 資金運用에 있어서의 效率性
II. 資金調達面에서의 效率性問題	N. 金融產業의 效率化方向
1. 資金調達問題	1. 金融(銀行)產業의 效率化方向
2. 資金調達에 있어서의 效率性	2. 金融制度의 改編方向
III. 資金運用面에서의 效率性問題	V. 結 論
1. 資金運用問題	

I. 序 論

金融機關經營은 다른 一般企業經營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 ① 一般企業에 있어서는 株主의 富의 極大化 또는 企業價值의 極大化등 뚜렷한 目標의 設定이 가능하지만, 金融機關은 公共性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企業固有의 目標 以外에도 需要者의 貸出需要의 총족 또는 賯蓄의 極大化 등의 目標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 ② 金融機關運營에서 資產과 負債에 관한 意思決定이 서로 獨立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企業財務에 있어서 資產運用과 負債·資本調達의 두분야로 經營者의 業務를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서로 獨立的으로 고려·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企業財務理論의 기본이다. 그러나 金融機關經營에 있어서는 貸借對照表의 借邊項目과 貸邊項目이 서로 關聯되어 있어서 資產 또는 負債에

* 產業研究所 研究員, 檀國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副教授(經營學博士), 財務管理

産業研究

대한 意思決定을 할 경우 相互關聯性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업보다 經營上의 規制가 많다는 것이다. 金融機關經營을 制約條件下에서의 最適化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金融機關이 그 目標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制約條件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經營上의 制約으로는 法的·流動性·管理的制約을 들 수 있다. 金融機關의 經營이 經營者가 당초 기대한 經營目標에 얼마만큼 접근하였느냐하는 것을 効率性評價의 基準으로 삼을 수 있는데, 金融產業의 合理的 運營의 정도를 集約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金融機關의 經營目標는 일반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民間貯蓄의 保管, 所要資金의 調達·供給機關으로서의 機能 등 公共性 側面이 강조되기 때문에 金融產業의 効率性評價에 있어서 企業性(收益性·安全性·成長性 및 生產性) 외에 公共性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II. 資金調達面에서의 効率性問題

1. 資金調達問題

(1) 銀行產業과 非銀行金融產業의 資金調達

銀行產業과 非銀行金融產業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銀行의 경우 資金調達의 기본이 되는 預受金比重이 非銀行金融機關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는데, 중요시되는 원貨預受金調達에 있어서는 市中銀行이 가장 낮은 수준(1983년에 37.0%)이라는 것이 地方銀行이 64.8%, 短期金融會社가 62.9%, 綜合金融會社 49.1%). 그리고 銀行은 總借入金比重이 매우 높은데 市中銀行(37.8%)이 보다 심하다는 점이다.(地方銀行 23.1%, 綜合金融會社가 33.0%, 短期金融會社 8.3%임).

市中銀行의 資金調達에 있어서 國內預金比重이 줄어들어 資金의 安定的 調達側面에서 문제가 되며, 높은 借入金依存度는 資金調達의 不安定化를 초래하고 調達cost와 관련하여 銀行收益性減少의 原因중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地方銀行의 경우에는 外貨資金調達比重이 비교적 낮아서 換危險面에서 市中銀行보다는 유리하지만, 전반적으로 預受金比重이 낮아지고 借入金依存度가 매우 높아서 資金調達에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있어서 안정적인 經營計劃을 수립하기 곤란하며 收益性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短期金融會社의 發行어음은 銀行의 資金調達과 비교하는 경우 銀行預金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残額의 比重이 1983년에 62.9%로 市中銀行 원貨預金의 構成比 37.0%나 總預受金構成比 48.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¹⁾

(2) 受信活動問題

1) 受信活動上의 問題

過大한 預金目標設定, 地域別·店舗別 特徵을 고려하지 않은 預金業績評價는 問題視되는 것이다.

그리고 合理的인 貯蓄市場調查가 이루어지지 않고, 預·貸連結과 관련된 合理的 分析을 하지 않는 것도 問題가 된다.

그 외에 受信과 관련된 機械化내지 電算化등의 서비스가 아직 미흡한 實情이다.

受信管理에 있어서 基本이 되는 것은 合理的인 預金目標의 設定이다. 왜냐하면 適切한 目標設定은 組織構成員의 成就意欲을 鼓舞시키고 執行結果에 대한 統制를 위한 評價 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實的으로 대부분의 金融機關에서는 단순한 感에 의해 決定하는 方式으로 預金(受信)目標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개 主要經濟指標(즉 國民總生產·總通貨增加率·國內與信·經濟成長率·都賣物價上昇率·輸出入額·名目貨金上昇率 등)를 기초로 하여 지난 年度의 實績值에 一定率을 부가하여 預金目標를 設定한 것이다. 그리하여 過大한 預金目標設定은 管理費用의 增大를 招來하고, 實質的 收益性 또는 安全性 提高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金融機關全體로서의 目標를 설정한 후에 각 支店(店舗)別 預金目標를 割當하는 下向式 配定方式을 택하여왔기 때문에 각 支店別 預金目標는 각 店의 特殊性이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2) 預金構成上의 問題

貯蓄性預金의 期限區分이 非銀行 金融商品에 비하여 細分化되지 않았으며, 預貸마진이

1) 全國銀行聯合會, 全國投資金融協會 資料.

產業研究

그리고 賯蓄性預金의 大宗을 이루는 定期積金과 定期預金의 座數와 金額의 比重이 減少되고 있는 것은 安定的 資金調達面에서 問題視된다.

한면 要求拂預金으로서 여러 長點을 지닌 家計綜合預金의 構成比重이 적다는 사실 (1983년에 0.3%) 도 주목할만하다.

3) 制度上의 問題

銀行法上의 制約, 他 特別法과의 모호한 관계등은 新金融商品導入에 障碍要因이 되어왔다. 店舖·夜間金庫·現金自動支給機의 設置등 金融機關 自律에 맡길 수 있는 사항도 관련법 규에 의해 制約을 받고있다.

그리고 第2金融圈의 金融證券이 銀行의 賯蓄手段과 競爭商品이 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金利水準差異로 인한 收益性面에서 問題가 된다.

2. 資金調達에 있어서의 効率性

(1) 資金調達에 있어서의 收益性

金融政策의 목표를 그동안 經濟成長에 필요한 投資財源調達을 위한 內資動員의 極大化에 둘으로써 銀行의 收益성이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이후 政府의 私金融陽性化와 資金調達源의 多樣化를 위한 第2金融圈의 육성내지 短期金融市場의 育成施策으로 銀行의 受信金利 및 預貸마진을 人爲的으로 낮게 설정함으로 인하여 銀行을 통한 資金調達은 限界點을 노출함으로써 銀行의 收支基盤이 弱化되었다. 그 결과 1972~1983년의 平均 總資本純利益率은 市中銀行의 경우 0.67%, 地方銀行이 0.95%로서, 短期金融會社 (3.51%) 投資信託會社 (7.36%) 또는 製造業 (2.31%)의 수준보다 크게 뒤떨어지게 된 것이다.²⁾

(2) 資金調達에 있어서의 安全性

銀行經營面에서 볼 때 調達コスト가 낮으면서도 安定性이 있는 資金調達은 安全性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借入金보다는 預金의 증대가 바람직한

2) 韓國銀行, 全國銀行聯合會, 全國投資金融協會, 各投資信託會社資料

낮은 1년이상의 長期性預金比重이 높은 편으로, 따라서 銀行收益側面에서 留意하여야하는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銀行에서 預金이나 金融債의 比重보다는 借入金 比重(借入金依存度)이 높아지는 것은 流動性確保의 측면과 관련하여 安全性에 다소 負擔이 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資金調達과 관련하여 安全性을 높이는데는 資本金의 적절한 확보가 또한 중요시되는 것이다.

(3) 資金調達에 있어서의 成長性

經濟成長에 따라 銀行產業의 外形이 增加하였지만 그 成長速度는 國民經濟의 成長度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全體金融市場에서 銀行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낮아졌다. 다시말하면 資金流通市場에서 銀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 (1970년대 초반)에서 36.8% (1983년)로 낮아진 것이다.³⁾

이러한 相對的인 成長性의 劣勢는 銀行經營面에서 資金調達의 主要制約要因이 된 것이다. 成長性의 代表的指標라 할 수 있는 總資產增加率이 1972 ~ 1983년에 市中銀行의 경우 평균 31.1%, 地方銀行의 경우 40.5%에 달하였지만, 預金增加率은 각각 26.9%, 32.8%로 資金調達面에서 貸出需要增加등을 뒷받침하는데 未洽한 것을 알 수 있다.

(4) 資金調達에 있어서의 公共性

꾸준한 資金調達努力으로 預金絕對額은 增加하였다. 그렇지만 總資金調達額중에서 預金이 차지하는 비중이 市中銀行의 경우 50.5% (1972년)에서 37.0% (1983년)로 減少하였고, 外貨借入金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4.5%에서 25.3%로 증가한 것이다.⁴⁾ 이와같은 현상은 企業에 長期低利의 資金供給을 하기위하여 受信金利를 市場金利보다도 낮게 책정한 결과로 銀行預金이 短期金融市場, 證券市場, 私債市場 또는 不動產投機등으로 流出되고, 經濟成長에 필요한 資金의 供給이 預金으로 還流되지 못한데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3) 韓國銀行資料

4) 全國銀行聯合會, 『銀行為業의 效率性 分析과 效率化方案』, 1985, pp. 202 - 206.

産業研究

< 표 - 1 >

金融機關의 受信占有率推移

(단위 : %)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銀 行	85.7	82.1	79.3	73.3	64.6	57.6
非 銀 行	14.3	17.9	20.7	26.7	35.4	42.4
(投資金融)	(6.3)	(9.7)	(10.8)	(13.3)	(14.5)	(16.3)
(投資信託)	(0.2)	(0.9)	(2.8)	(4.0)	(9.5)	(10.0)
(其 他)	(7.7)	(7.3)	(7.1)	(9.4)	(11.4)	(16.1)

資料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 표 - 2 >

金融貯蓄殘額의 部門間 構成比 推移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貯蓄性預金	75.5	60.0	45.9	35.7 ¹⁾
非銀行貯蓄	19.0	28.2	37.8	52.7
有價證券	8.9	15.6	21.7	25.7
部門間去來(△)	3.4	3.8	5.4	14.1
總 計	100.0	100.0	100.0	100.0

註 : 1) 讓渡性預金證書 (CD) 包含.

資料 : 財務部, 金融貯蓄統計, 1986.

< 표 - 3 >

金融機關別 資產構成比 推移¹⁾

(단위 : %)

	1977	1983	1984	1977 - 84 증가율
一 般 銀 行	35.7	37.6	35.7	27.0
特 殊 銀 行	21.4	20.7	20.0	25.7
投 資 金 融	1.8	2.4	3.4	39.6
綜 合 金 融	0.3	1.1	1.2	59.1
證 券 會 社	0.4	0.4	0.5	27.5
投 資 信 託	0.7	3.1	3.2	58.4
開 發 機 關 等 기 타	39.7	34.7	36.0	

註 : 1) 通貨 및 非通貨金融機關의 總資產 가운데 차지하는 比率임.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III. 資金運用面에서의 効率性問題

1. 資金運用問題

(1) 銀行產業과 非銀行金融產業의 資金運用

市中銀行 및 地方銀行은 대부분 資金을 貸出金 및 預置金등에 運用하고, 有價證券投資에는 비교적 소홀하다.

資金運用構成比를 보면 貸出金部門에서 1972 ~ 1983년 평균 市中銀行이 54.4%, 地方銀行 57.9%에 비하여 有價證券部門은 평균 市中銀行 7.1% 地方銀行 11.3%이다. 現金 및 預置金構成比를 보면 같은기간동안 평균 市中銀行 27.4% 地方銀行 21.2%로 現金 및 預置金計定에 비교적 많은 資金이 運用되고 있다.⁵⁾ 現金計定의 運用에 있어서 預金增加를 위한 未推尋他店券의 過多保有로 支給準備金 負擔額만 增加시켜 收益性을 沮害한 것이다. 그리고 預置金運用에 있어서 短期金融會社 및 綜合金融會社는 각 去來銀行에 定期預金으로 預置하여 이에 따른 預金利子의 受入 및 當座借越의 利用등 收益面 및 資金管理面에서 市中銀行보다 有利한데 反하여, 市中銀行에서는 預置金을 韓國銀行에 無利子 또는 低利로 預置하여 收益面에서 不利하다.

有價證券運用部門에 있어서 短期金融會社 및 綜合金融會社는 收益性이 좋은 有價證券의 모집 및 매출 주선으로 활발한 業務로 운용하고 있으나, 市中銀行의 有價證券投資는 대체로 銀行自體에서 능동적으로 投資決定를 하기보다는 外部的要因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貸出需要가 資金의 供給能力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貸出優先政策으로 인하여 有價證券investment는 부수적인 資產運用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固定資產投資問題에 있어서 第2金融圈에 비하여 銀行이 相對的으로 높은 構成比를 나타냈는데 이는 과도한 支店擴張 및 貸借保證金의 增加에 基因하며 固定資產에 대한 投資의 增加는 收益性을 惡化시키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5) 韓國開發研究院,『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研究』, 1987, pp. 231 ~ 239. 全國銀行聯合會, 前揭書, pp. 193 ~ 217.

産業研究

< 표 - 4 >

金融資金 貸出中 政策資金 貸出現況

(단위 :億원)

區 分	1985. 12	1986. 9
金融資金貸出額 (A)	338,107	346,676
政策資金 (B)	90,442	109,197
貿易金融	31,299	34,626
中小企業特別資金	11,171	12,770
住宅資金	24,400	25,490
農·水·畜產資金	11,007	15,694
에너지節約施設資金	2,270	2,665
輸出產業設備資金	5,952	15,125
地方自治團體與信	4,343	2,827
B/A (%)	26.7	31.5

資料 : 財務部 .

< 표 - 5 >

市道別 人口, 預金, 貸出占有率 (1985年末 現在)

(단위 : 構成比, %)

	人 口	金融貯蓄 ¹⁾	預 金 ²⁾	貸 出 ²⁾
서울	23.8	64.3	61.0	63.2
부산	8.7	7.9	8.8	7.8
대구	5.0	3.8	4.2	4.1
인천	3.4	2.2	2.6	2.3
경기	11.8	4.2	5.4	4.4
강원	4.3	1.6	1.8	1.5
충북	3.4	1.3	1.2	1.3
충남	7.4	2.8	3.0	2.8
전북	5.5	1.9	1.9	2.5
전남	9.3	3.4	2.9	3.7
경북	7.5	2.3	2.2	2.3
경남	8.7	3.7	4.3	3.4
제주	1.2	0.6	0.7	0.7
계	100.0	100.0	100.0	100.0

註 : 1) 預金銀行貯蓄性預金, 非銀行貯蓄, 株式·社債, 國·公·金融債의 合計임.

2) 預金銀行分, 預金에는 要求拂預金 包含.

資料 : 財務部, 金融貯蓄統計, 1987.

韓國銀行, 調查統計月報, 1987. 3月號.

(2) 貸出金運用問題

1) 貸出金 構造上의 問題

貸出金은 銀行產業에서 가장 큰 收益源泉이 되는 것으로, 市中銀行이 1983년 12월 말 현재 貸出金總額(原貨)의 85.2%를 企業部門에 投下하였으며 家計部門에 9.3%를, 公共 및 其他部門에 5.5%를 運用하였다.

地方銀行도 企業資金貸出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貸出金總額의 78.2%를 점하고 있으며, 家計資金貸出이 19.3%, 公共 및 其他資金貸出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市中銀行은 企業部門과 公共部門에 대한 貸出金이 많은 편인데, 地方銀行은 家計部門에 대한 貸出金取扱이 상대적으로 높다.

2) 貸出取扱上의 問題

銀行의 收益性提高 및 銀行經營의 健全性維持는 貸出金取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도, 經濟開發計劃의 추진과정에서 內資動員이라는 政策的目標의 達成을 위해 受信增大에만 注力하여온 감이 있다. 더욱이 貸出需要가 銀行의 資金供給能力을 초과하고 있어서 貸出金運用을 소홀히 취급한 감이 있으며 따라서 貸出取扱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즉 우선 貸出에 대한 意思決定權限이 上部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營業店長의 專決限度가 적어서 대부분 本部의 審查를 거쳐야 하므로 貸出取扱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 貸出審查가 形式化되고 未治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營業店長 專決限度를 초과하는 貸出이라도 우선 店長의 意思決定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巨額貸出이 上位 專決權者에 의해 意思決定이 이루어진 후 下向式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信用分析이 미흡하고 擔保中心의 與信運用을 하는 것이다. 信用analysis이 미흡한 상태에서 借入者の 信用보다는 債權確保를 위한 擔保為主의 貸出取扱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따라서 財務比率 또는 信用狀態가 良好한 企業이 不動產擔保不足으로 貸出을 받지 못하게 되는 實情이다.

그 외에 統計業務의 過多와 業體別 與信管理의 未治을 들 수 있다.

3) 貸出事後管理上의 問題

債權回收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債權者인 金融機關이 債務者인 借主에 대하여 貸出資金이 본래의 目的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함은 물론 借主의 經營狀態·資產變動狀態·事業展

産業研究

望등을 항상 파악하여 債權保全에 萬全을 기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借主의 信用狀態・負債比率・擔保內容・貸出金의 用途 등을 貸出取扱時 審查한 것으로 대신하고, 擔保物에 대한 管理・貸出條件의 이행여부・貸出期日管理등이 事後管理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貸出金의 用途를 재확인한다든지 融資效果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貸出金을 포함한 借主 資金의 흐름을 파악하여 貸出金의 効率的인 回收 내지는 企業의 不實徵候를 事前에 파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與信管理에 관한 統制問題

投資가合理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企業이 投資의 長期的 收益展望과 金融費用을 比較分析하여 投資에 대한 檢討를 하고 金融機關은 나름대로 信用있는 企業에 適正金額을 融資하고 所定期日에 元利金을 回收할 수 있는지를 審查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審查를 거친 貸出金일지라도 債權確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損失을 最小化하는 조치가 金融機關 스스로에 의해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策當局에서는 經濟開發過程에서 제 한된 資金을 効率적으로 運用하기 위하여 政策金融의 擴大뿐만 아니라 金融資金에 대해서도 金融部門資金運用規程・銀行監督院 通牒등은 물론 企業評價指針・貸出金限度去來運用指針・主去來銀行與信管理協定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統制를 해 온 것이다.

貸出金運用에 있어서 政策當局의 지나친 統制는 金融機關經營層의 意思決定能力의 弱化를 초래하였고 새로운 金融技法導入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貸出金은 不實化의 程度가 심하여 貸出金의 健全性을 악화시켜서 金融機關의 安全性 및 收益性을 低下시키게 되는 것이다.

2. 資金運用에 있어서의 効率性

(1) 資金運用에 있어서의 收益性

銀行產業은 貸出金運用에 置重하여 有價證券部門에 投資를 擴大하지 못하였다.

總營業收益中 主要業務(원貨)關聯 收益比重을 보면 市中銀行은 1981년 收益(원貨)의 比重이 69.9%, 1982년 68.2%, 1983년 69.0%를 나타낸데 比하여 地方銀行은 86.3% 9.16%, 94.0%로 대부분의 收益을 資金(원貨)運用部門에서 얻은 것이다. 總營業收益中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科目別 主要業務(원화)關聯 收益比重을 보면, 貸出金利子收入(1981~1983 평균)이 市中銀行 40.9%, 地方銀行 57.4%로서 대부분의 運用收益(원화)을 貸出金運用으로 얻고 있어 收益性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⁶⁾

그리고 有價證券收益도 貸出金다음으로 收益性에 큰 영향을 미치며 3개년평균 市中銀行이 10.3%, 地方銀行이 19.5%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預置金部門은 평균 3~4%로 市中銀行과 地方銀行이 같은 比率이다.

(2) 資金運用에 있어서의 安全性

總資產中 危險資產의 比率(1972~1983년 평균)이 市中銀行 73.3%, 地方銀行 90.5%로서 銀行產業의 安全性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같은 市中銀行 및 地方銀行이 모두 總資產運用中 대부분을 危險資產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金融產業의 본업무인 貸出業務의 比重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有價證券·社債·株式·固定資產에 대한 投資등은 安全性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資金運用에 있어서의 成長性

銀行產業은 매년 總資產增加率이 純化되고 있다. 總資產增加率(1972~1983년 평균)은 市中銀行 31.1%, 地方銀行 40.5%이다.

(4) 資金運用에 있어서의 公共性

資金運用(원화)과 公共性과의 관계를 보면 市中銀行의 경우 1972~1983년 평균 政策資金貸出이 42.4%, 中小企業貸出이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6년 9월 말 현재 政策金融의 金融資金 貸出額에 대한 比率은 31.5%에 달하고 있어서, 公共性 위주의 資金運用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⁷⁾ 이와같은 政策金融의 過多는 投資에 대한 銀行의 商業的判斷에 의한 審查機能이 政府의 공식 또는 비공식 간여증대로 생략되어 貸出不實化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小企業貸出比率(1972~1983년 평균)을 보면 市中銀行의 경우 26.7%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貸出資金이 大企業에 편중 운용되고 있다.

6) 韓國銀行資料 및 全國 銀行聯合會 資料.

7) 韓國開發研究院, 『우리 나라 金融政策 運營現況과 改善方案』, 1987. 7. pp. 179~180.

V. 金融產業의 効率化方向

1. 金融(銀行) 產業의 効率化方向

(1) 資金調達面에서 的 効率化方案

1) 資金調達管理에 대한 自律性擴大

① 新商品開發의 認可事項에 대한 自律性

金融機關(銀行)에 있어서 資金調達管理의 主要手段인 新商品開發에 대한 制度上 制約을 완화하여 自律이 保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銀行法上 固有業務가 아닌 附隨業務 및 周邊業務의 取扱도 적극화 할 수 있도록 關聯法條項이 明示되고 認可第次가 簡素化 되어야 하는 것이다. 銀行法에는 銀行業務·銀行業이 아닌 業務·銀行의 附隨 내지 周邊業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따라서 新種業務를 取扱할 때마다 監督當局의 有權解釋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가령 日本銀行法과 같이 銀行이 축급하는 업무를 銀行業務·證券業務·기타로 大別하여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明示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銀行法에 銀行事務·附隨業務·周邊業務·其他로 종류별로 명시하여 任意解釋의 여지를 배제하여야 한다.

② 店舖管理의 自律化

店舖管理에 있어서 실무적사항에 관하여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認可 없이도 할 수 있도록 銀行法의 일부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즉 金融機關의 本店·支店 등의 住所變更 등에 대하여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事前認可를 생략하고 報告事項으로 함이 좋겠다.

店舖新設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政策的 方針은 監督機關이 정하되 實地 심의는 銀行聯合會등에서 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現金自動支給機設置·夜間金庫의 營業店外 설치등 비교적 사소한 서비스機器設置의 認可등을 金融機關(銀行)間의 自律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2) 預金調達目標의 合理的設定

預金目標의 設定은 단순한 經驗이나 느낌보다는 合理的方法 예를 들면 統計的方法을 써서 預金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를 찾아내어 이를 變數와 과거의 預金實績과의 相關係係를 파악하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여 目標預金額을豫測하고, 預金擔當職員의 누적된 經驗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目標預金計數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預金業績評價의 改善

預金業績評價制度에 與信規模 또는 資金調達cost를 감안한 收益性概念이 加味되어야 한다.

그리고 業務量과 人員配置의 불합리성을 排除하기 위해 査定基準에 있어서 店舗의 與件 (예를 들면 商業地域·住居地域·工場地區등)에 따른 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貯蓄推進活動의 改善

顧客의 정확한 欲求가 파악되어야 이에 맞추어 마케팅戰略을 수립할 수 있다. 地域別·階層別特性에 따라 고객이 要求하는 바가 다르며 변화하는 고객의 欲求에 잘 적응함으로써 金融機關(銀行)의 業績은 伸張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한 貯蓄市場調查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顧客에 대한 貯蓄推進(涉外)活動은 각 企業體 또는 巨額預金對象者외에 一般住宅街 또는 商街地域對象으로 나누어 실시하면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要員들은 그 활동에 전념하도록하든지 또는 다른 업무를 겸무할 경우 가벼운 업무를 마끼도록하는 것이 좋다. 또한 市場(또는 顧客)細分化에 맞추어 要員의 職級도 달라지고, 適切한 수의 顧客이 割當되도록 하여야 한다.

(2) 資金運用面에서의 効率화方案

1) 與信業務의 自律性 保障

점차 經濟規模가 확대됨에 따라 官主導型運用은 限界에 달하여 効率性이 低下되고 여러 問題點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처하기위하여 經濟運用方式이 官主導에서 民間主導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金融機關의 資金運用에 대해서도 여러 規程·指針·通牒등의 통폐합등自律化措置가 취해졌는데, 金融產業의 건전한 發展과 責任經營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與信業務의 自律化가 절실하게 된 것이다. 與信事務중 무엇보다도 먼저 自律성이 촉구되어야 할 것은 貸出審查業務部門이다. 貸出審查業務가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貸出金健全性的 유지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審查業務의 自律性確保는 金融機關의 건전한

產業研究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貸出審査의 効率化

審査의 効率化를 기하기 위하여 우선 現金흐름分析 (cash flow analysis) 을 與信審査時活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審査는 財務比率分析 및 信用調査評點에 의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과거분석 내지 靜態分析이 되기 때문에 不實貸出金의 事前豫防을 위한 審査로는 미흡한 것이다. 그래서 企業體의 資金分析 · 資金需要豫測 · 借入金償還能力등의 검토가 가능한 현금흐름분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差等利子率制를 확대하여야 한다. 金融機關에서 貸出取扱을 할 경우 物的擔保를要求하고 信用에 의한 與信은 기피하는 것이 通例이었고, 또한 貸出利子는 同一한 金利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金利構造가 單純化되고 硬直的인 問題가 있었으며 落後原因의 하나이었다.

앞으로는 貸出取扱時 不動產擔保만을 취득하기는 어려우며 信用貸出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는데, 信用의 확대에 따른 合理的인 貸出條件으로서 差等金利의 適用基準을 확립하여 운용하는 것은 審査의 効率化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金融機關은 借主의 信用狀態를 分析하는 技法을 습득하여야하며 信用分析結果에 따라 差等金利와 貸出條件이 결정되어야한다. 이와같은 信用分析能力과 金利運用機能은 金融機關의 건전한 經營과 競爭속에서 貸出業務擴張 및 收益性確保라는 金融機關經營의 根本的問題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貸出審査役制度의 實質的導入이 要請된다. 貸出業務의 効率的遂行을 위해 實質的인 審査役制度를 도입하여 經營 上層部에 집중된 貸出의 決定權限을 專門的인 審査役에 實質的으로 委讓함으로써 貸出審査를 効率化하여야 한다.

끝으로 積極的인 信用限度制의 運用이 필요하다. 金融機關의 貸出中에서 限度의 設定이 있는 貸出 (割引여음 · 當座貸越등) 的 科目別 限度를 總體的으로 설정 ·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與信管理對象企業體에 국한하여 부분적인 限度制가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信用限度의 설정은 金融機關으로부터 빈번하게 貸出을 받는 거래처로서 優良業體가 그 對象이 되는 것이다. 限度設定後 限度內의 貸出要求에 언제나 응할 수 있도록 貸出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信用限度를 설정 · 운용하여야 한다.

3) 貸出事後管理의 強化

현재의 貸出事後管理는 不實貸出金을 事前에 예방하기 위한 事後管理라기보다는 事後의인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管理 즉 借主의 倒産 또는 不渡 直前に 이르러서 비로소 擔保不動產管理 및 關聯 連帶保證人 의 財產追跡 등 受動的 姿勢로 債權確保를 해온 것이다.

그 原因으로는 貸出取扱部署에서 事後管理業務까지 겸하게되어 事後管理를 소홀히 한 것을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物的擔保爲主의 貸出金運用에 基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貸出運用이 擔保爲主에서 信用中心으로 轉換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舊態依然 한 事後的인 事後管理로는 본래의 事後管理責任을 다할수가 없는 것이다. 不實貸出金의 發生을 事前에 防止하기 위해서는 體系的으로 情報를 수집하여 事後管理에 활용할 수 있는 業務體制, 去來處의 不實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業務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같은 業務體制의 一環으로, 企業의 不實徵候를 事前에 파악하기 위하여 情報管理를 專擔하는 獨립된 部署를 設置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不實의 우려가 있는 問題企業에 대해서는 具體的이고 細部的인 情報를 수집 관리하고, 또한 財務的인 統制를 강화 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情報의 内容으로는 어음·手票의 發行狀況 延滯 및 代支給의 발행빈도 租稅公課金·賃金등의 체납여부 經營內紛 勞動爭議 그리고 經營者の 私生活에 관한 情報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財務的인 統制事項으로는 貸出去來狀況 短期惡性債務의 變動事項 短期支給能力 資金運用狀況 事業計劃의 進步狀況등을 分析點檢하여 최종 意思決定에 대비하여야 한다.

4) 貸出金運用의 効率化

일반적으로 貸出에 있어서 外見上 1년이내의 대출인 運轉資金貸出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改書 또는 再貸出에 의해 상당기간 연장되는 長期貸出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대출금자체의 流動性提高를 위하여 商業어음割引·當座貸越등 短期商業金融의 운용폭을 대폭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貸出金運用의 効率化를 위하여 信用貸出의 확대가 요청된다. 債權의 안전확보를 위한 擔保爲主의 與信運用은 오히려 많은 非効率性을 露出시키고 있다. 企業信用을 위주로 與信이 이루어져야 信用있는 企業에 資金이 提供될 수 있고 貸出金의 健全性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5) 周邊業務를 통한 資金運用의 効率化

資金運用上의 周邊業務인 信託貸出 信用카드 팩토링업무 리스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지만

產業研究

개발된지 얼마되지 않아 實績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效果도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변업무의 개발은 新種業務의 무분별한 도입을 하는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준비를 함으로써 利益이 발생하는 신종업무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收益性 또는 市場性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신종업무의 확대를 지양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신종업무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3) 金融產業體制의 整備

金融產業의 體制는 金融業務를 直接 營為하는 金融機關間의 有機的體制와 金融機關의 業務를 調整하거나 監督하는 公權力的體制가 있는데, 이러한 體制가 合理的으로 編制되고 運營되어야 金融產業의 원활한 발전을 期할 수 있는 것이다.

金融은 國家經濟的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金融產業은 다른產業에 비하여 公共的性格이 강하며 이러한 公共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公權力的規制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金融產業에 대해서는 設立·運營에 관한 事項을 法律로서 정하게 되며 이에대한 監督體系도 강화되는 것이다.

한편 金融產業은 金融서비스를 제공하고 收益을 얻게되는 企業으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企業的運營이 요구된다.

이와같은 金融의 公共性과 企業性을 어떻게 調和시키느냐 하는것이 金融產業發展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부터 金融의 自律性提高를 통한 質的인 發展政策이 취해지고 있는데, 金融의 自律性提高를 위한 政策은 기대한대로의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느면에서는 過當競爭에 의한 逆作用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金利自律化的 未進展, 通貨管理手段의 開發未洽, 銀行의 不實債權過多保有로 인한 自生能力喪失과 金融機關의 企業性에 대한 일반의 理解不足등 현실적으로 未洽한 與件下에서 金融自律化政策을 성급하게 推進한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金融產業體制의 整備는 現實與件을 감안하여 段階的·漸進的으로 推進해 나가야 한다.

2. 金融制度의 改編方向

(1) 銀行의 改編方向

1) 金融의 自律化

金融機關의 公共性은 健全한 信用制度의 維持·預金者保護·資金의 効率的配分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며, 企業性은 利潤動機에 의한 創意性·能率性을 바탕으로한 金融機關의 收益增大를 통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金融機關의 業務運營은 公共性과 企業性이 잘 調和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 金融에 대하여 지나치게 公共性이 強調되어 金融機關自體의 自律性·創意性에 바탕을 둔 金融發展이 沮害되고 審查機能의 未發展으로 資金의 効率的配分을 期待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不實債權의 過多保有에 따라 收益基盤이 弱化되어 金融產業이 落後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金融產業의 발전을 위해서는 金融의 自律化를 통하여 企業性이 提高되어야 하는 것이다.

金融의 規模가 작고 單純하였던 과거 經濟開發初期에는 資源의 効率的配分이라는 次元에서 金融에 대한 政策當局의 획일적이고 강력한 規制가 바람직한 면도 있었으나, 經濟의 규모가 커지고 金融資產도 증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政策當局의 規制가 오히려 金融市場을 歪曲시키고 金融產業의 발전을 沮害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金融產業의 발전을 위해서는 金融의 自律性을 최대한 保障하여 金融機關의 創意性을 높이고 市場原理에 의한 競爭을 促進시켜서 企業性을 높이는 方向으로의 政策轉換이 필요한 것이다.

2) 一般銀行의 業務領域調整

一般銀行의 業務領域은 金融媒介機關이라는 점과 去來手段을 創出한다는 두 가지 성격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최근 銀行에서는 팩토링 還買債去來등으로 業務取扱範圍를 확대하여 兼業主義로의 進展이 이루어졌는데, 이와관련된 문제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銀行法은 制定當時 金融信用制度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점을 감안하여 金融業務를 機關別로 細分化하지 않고 銀行業務를 포괄적으로 規定하였던 것이다. 즉 銀行法은 業務領域에 관하여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중반에 特殊銀行의 設立을 계기로 分業主義를 指向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서 短期金融會社를 비롯한 각종 新種 金

產業研究

融機關이 발족하도록 허용하여 分業主義 추세가 뚜렷해졌다. 또한 銀行들이 母會社가 되고 非銀行金融機關을 子會社로 하는 系列化가 심화되었다. 그러나 金融產業 改編에 대한 기본적 구상이 정립되지 않은채 그때 상황에 따라 銀行이 第2金融圈에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子會社 設立에 의한 業務擴大는 一般市中銀行의 성격을 銀行持株會社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와같은 변화에 대비하여 銀行持株會社의 性格·業務·規制등을 法制化하는 銀行法改定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政策當局은 銀行의 證券業 兼營을 금지 해왔는데 그 이유는 證券業이 銀行의 安全性과 健全性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社債나 株式의 引受는 상대적으로 危險性이 커서 安全과 信用을 생명으로하는 銀行에서 취급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證券業은 利害의 相衝 (conflict of interest) 問題를 야기시켜 貸出審查決定에 있어서 公正性과 合理性를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社債나 株式의 引受가 銀行 (商業銀行)의 貸出보다도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인지는 經驗에 의해 判別될 문제이다.

3) 一般銀行의 經營改善

① 責任經營體制

銀行의 自律的經營確立의 遲延은 우리 經濟의 여러 構造的 問題때문인 것이다. 1980년대초부터 논의되어 온 產業調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조정을 위한 企業의 合併·整理·投資計劃의 修正은 政策當局의 金融干與를 不可避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不實化된 企業을 政府主導下에 救濟하거나 처리하게되면 銀行의 自律經營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企業의 不實은 해당 기업과 關聯銀行이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政策當局은 일단 임명된 銀行의 經營陣에 대하여 적어도 任期中에는 責任을 지고 經營하도록 自律性을 보장하고 그 成果를 가지고 論할 문제이다.

또한 有名無實化된 理事會를 活性化하여 그 機能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支店經營의 改善

새로운 金融商品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非通貨金融機關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銀行은 地域別·業務別로 經營을 分散할 수 있도록 體制를 정비하여야 한다.

銀行은 전통적으로 不特定多數의 顧客으로부터 小規模資金을 動員하기 때문에 少數의 顧客으로부터 대규모자금을 조달하는 非通貨金融機關에 비하여 資金調達面에서 平均費用이 상대적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으로 높아 競爭上 不利하다. 앞으로 少額貯蓄에 대한 金利가 自由化되어 市場金利에 따르게 된다면 銀行의 收支는 더욱 압박을 받게될 것이다.

一般銀行 (commercial banks) 은 방대한 支店網과 組織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金融自律化에 따른 業務領域의 擴大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銀行 支店은 위치하고있는 地域의 特性과는 별로 관계없이 그 業務가 일률적이다. 이와같은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그 지역의 經濟的 特殊性을 감안하여 顧客이 요구하는 金融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支店運營이 改編되어야 한다. 中小企業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支店은 이에 맞는 中小企業支援體制로, 大都市의 중심부에 있는 支店은 大企業相對의 企業金融 또는 貨幣市場關聯業務에 치중하도록 體制를 갖추어야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一般銀行은 그 성격이나 업무내용이 서로 달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單位銀行支店으로 구성되는 企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銀行本店은 이와같은 여러 支店을 子會社로 가지고 있는 銀行持株會社와 같은 역할을 하면되는 것이다.

4) 地方銀行制度의 改編方案

地方銀行 (local banks) 은 金融서비스의 地域的均霑을 誘導하며, 金融의 經濟發展 先導機能을 통하여 地方의 內資動員體制를 확충하고 地方產業을 金融側面에서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地方社會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地方銀行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상당수의 地方銀行은 與信業務에 있어서 서울支店에 과다히 의존하여 실질적으로 서울支店이 本店 구실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地方經濟의 貯蓄增大와 投資支援에 기여하기 보다는 地方의 貯蓄을 서울지역으로 移轉하는 手段이 되고있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金融의 自律化·國際化가 추진되어 一般銀行·特殊銀行의 地方店舗가 증설되고 非銀行金融機關의 업무가 다양화함에 따라 地方金融市場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새로운 金融與件에 적응하기 어려운 地方銀行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여 이에 대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地方銀行의 改編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두가지 기본적인 方案을 생각할 수 있다. 그하나는 地方銀行을 단계적으로 全國銀行 (市中銀行) 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地方銀行이 그야말로 地方經濟基盤을 바탕으로 지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政策的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강요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둘째번 방안은 政策當局이 地方銀行의

產 業 研 究

當面한 경쟁 상의 不利點을 제거해줄 수 있는 政策的配慮를 前提로 한 것이다.

첫째번 方案은 地域經濟圈의 廣域化 추세에 적응하여 行政區域單位 中心의 營業區域을 地域經濟圈으로 전환하거나 조정하며 廣域都市를 중심으로한 全國銀行 (nation-wide commercial banks)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장차 全國銀行으로 改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地方銀行의 全國銀行化에는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설사 地方都市를 거점으로한 地方에 本店을 둔 全國銀行이라 할지라도 서울지역의 영업에 치중하게 될 것이 뻔하다. 本店所在地와는 관계없이 地方銀行의 全國銀行化는 그 數만큼 一般銀行 (商業銀行, commercial banks) 을 設立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地方銀行은 地域社會의 企業과 家計를 對象으로하며 이들 金融需要의 特殊性에 專門化된 銀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地方銀行은 地域別로 營業區域이 제한된 것 외에는 일률적인 一般商業金融서비스를 하고있어서 地域에 따른 特化란것은 찾기어렵다. 그렇다면 地方銀行制度의 改編은 業務區域을 現行行政區域으로부터 地方經濟圈 중심으로 廣域化하는 것이 좋겠다. (즉 가령 예를들면 嶺南·湖南·忠清·京畿 및 江原地域등으로 廣域화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地方自治制가 실시되면 각 地域社會의 特性을 부각시켜 地域社會를 母體로하는 經濟發展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地方自治制實施에 따라 地方銀行은 地域社會의 중요한構成員으로서 地域社會發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地方銀行은 최초의 設立目的에 부응하는 地方銀行으로 成長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非銀行金融機關의 改編方向

1) 基本改編方向

非銀行金融機關의 改編目標는, 安全性과 健全性을 확보하고 金融機關의 受信顧客 또는 投資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同種 또는 異種 金融機關間의 競爭 및 補完關係를 절충하여 金融產業의 전반적인 効率性提高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목표를 전제로하여 改編의 主要課題에 대한 基本方向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 業務領域 調整

銀行과 非銀行金融機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支給手段인 要求拂預金의 유무로 하고, 非銀行金融機關의 業務領域調整의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하면 된다. 즉 短期金融會社에 있어서는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株式業務를 제외한 綜合金融業을 점차 확대 허용하도록 하고, 綜合金融會社의 경우에는 自體 어음發行을 축소화하며, 發展期에 이르면 두 機關을 同質化시켜 모든 업무를 함께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大型化 誘導

金融業중에서 資本力의 기초가 필요한 業種의 경우 選別의으로 大型化 및 內實化를 誘導한다. 종래 大型化를 納入資本金의 增額으로 간주한 결과 僞裝出資로 인한 不實化가 촉진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自己資本을 기준으로한 大型化에 역점을 두기로 한다.

③ 國際化對備

앞으로 外國機關의 國內進出이 銀行보다는 非銀行金融機關面에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外國人의 出資許容限度 · 監督機關의 機能整備등 과제를 밝혀야한다.

2) 短期金融會社의 경우

一般銀行과는 달리 短期金融會社는 설립이래 政策當局의 金融介入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成長 · 發展하도록 허용되었으며, 金利를 비롯하여 새로운 제도의 定着을 위한 유리한 조건下에서 순조로운 營業伸張과 높은 收益率을 지속하여온 것이다. 그렇지만 金融自律化 추진과정에서 經營與件이 다른 金融機關의 新商品開發 · 相對的 金利隔差의 축소 · 政府規制의 강화 · 中小企業支授등 政策協調要請의 확대등으로 收支가 惡化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短期金融業界가 短期的 營業實績의 문제보다는 근본적이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앞으로 金融產業發展推移에 따라 점차 短期金融會社들은 成長基盤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市中銀行이 民營화이후 종래의 銀行業務테두리 안에 定着하는데 그치지 않고 兼業主義下에서 팩토링 · 리스業務등 金融周邊業務를 포괄하여 業務領域을 확대하고 앞으로 短期金融業務로의 進出幅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綜合金融會社에서 短期金融業 이외의 다양한 金融業務를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短期金融會社의 業務擴大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融產業의 改編과 관련하여 制度의 改善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 轉換方案

短期金融會社의 轉換을 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要素는 短期金融會社間에 資本金規模 · 營業實績등에 相異點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短期金融會社의 改編方向은 우선 資本金規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產 業 研 究

⑦ 統・廢合

納入資本金이 비교적 少額인 短期金融會社들을 統合한다.

⑧ 綜合金融會社化

納入資本金이 中型인 短期金融會社에 대하여는 綜合金融會社로의 전환을 誘導한다.

⑨ 地方銀行化

納入資本金의 大型社는 相互合併을 통하여 新規 地方銀行化하든지 또는 改編되는 기존 地方銀行과의 合併을 許容한다.

한편 業務內容에 있어서의 整備期중에 株式關聯業務를 제외한 綜合金融業務를 許容토록하고, 短期金融業法과 綜合金融業法을 조정하여 單一法으로 制定하며, 自體어음發行限度는 自己資本 1배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그러다가 發展期에 이르게되면 株式關聯業務까지 허용하여 實質的인 短資會社·綜合金融會社 및 證券會社를 同質化한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短期金融會社와 證券會社가 統合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

② 都賣金融特性의 強化

다른 金融機關과의 均衡的發展을 위하여 短期金融에서 취급하는 金融商品의去來單位를 上向調整하고 残額規定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어음管理計座(CMA)設置이후 銀行預金과의 경합이 두드러지게 되면서부터 그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다.

③ 信用評價機能의 發揮

投資危險分析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貸出基準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원래 金融機關은 公信力으로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취급되는 金融商品도 信用을 기반으로 創出되는 것 이므로 합리적인 貸出基準의 근거로서 企業의 信用分析이 필수적 과정이며 이 업무는 객관적 권위가 있는 독립적인 信用評價機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綜合金融會社의 경우

綜合金融會社의 金融業務는 短期金融會社 또는 證券關聯會社와 利害關係가 相衡된다.

金融產業 改編問題에 있어서 綜合金融會社는 두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業務領域이 종래의 金融制度로 보아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綜合金融會社들이 外國資本과의 合作投資形態로 되어있어서 業務領域을 縮小調整하게 되면 既得權을 주장하고 나설 公算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基本改善方向을 제시하면 다

金融產業 効率化方向에 관한 研究

음과 같다.

① 業務領域의 整備

綜合金融會社 業務領域의 개편에 대해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株式의 引受·募集 또는 賣出業務를 제외한 現行法上의 金融業務를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自體어음 發行은 현행대로 (自己資本의 3배를 上限으로하고 1배를 下限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金融市場與件의 变화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現行法上 營業領域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며, 自體어음發行限度는 1979년말 改正以前의 當初方針으로 환언하여 自己資本以內로 제한하는 것이다.

② 證券投資信託業의 制限

證券發行에 있어서 證券의 引受 및 周施業務를 담당하는 綜合金融會社가 證券投資信託業務를 兼營하게되면 投資信託顧客의 利害와 會社와의 利害衝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된다. 다시 말하면 引受한 有價證券의 賣出이 不振할 경우 이를 投資信託基金에 편입시켜서 會社의 損失을 회피하고 顧客에게 손실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것이다.

③ 企業金融用役業務의 活性化

投資管理내지 投資相談·事業妥當性檢討·資金調達周旋등 企業에 대한 金融用役 및 企業經營指導業務는 綜合金融會社에게 적합한 업무이므로 이를 확대하도록 한다.

④ 外資關聯業務의 擴充

綜合金融會社들은 外國資本의 合作業體로서의 利點을 살려 앞으로는 外資導入·合作投資 및 技術導入의 周旋業務를 확충 강화하여야 한다.

4) 相互信用金庫의 경우

相互信用金庫의 本然의 機能은 特定地域住民들로부터 貯蓄資金을 調達하여 中小 零細商工人 및 地域住民에 대하여 少額事業資金 및 家計資金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庶民金融·地域金融으로서의 相互信用金庫 特性을 견지하는前提下에서 改編方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지역내의 零細商工人·家計뿐만아니라 中小企業까지를 對象顧客으로 삼아 一般銀行에서 고통받기 어려운 金融서비스의 專門分野를 개척하여야 하며, 또한 店舗網도 一般銀行과는 달리 일정 한 營業區域內에서 철저하게 收益性에 입각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產業研究

① 選別的 育成基準에 의한 改編

納入資本金·營業實績·債權健全性·事故發生率·經營陣의 資質등을 기초로한 等級 (A, B, C 등) 을 설정하여 選別的 育成方案을 마련하고서 適者育成 不適者統廢合原則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相互信用金庫業界의 전반적인 經營效率化를 誘導한다.

② 店舗規制

金融產業의 整備期에는 新規設立을 抑制하고, 相互信用金庫業界的 實際 경쟁기반이 이룩되면 新規設立을 원칙적으로 許容하되 相互信用金庫의 金融서비스 需要를 감안하여 매년一定數로 한정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 하겠다.

支店網 擴充에 있어서는 地域金融의 特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며, 上位等級 내지 健實한 相互信用金庫에 한하여 一定營業區域內에서의 支店開發을 허용토록 한다.

③ 銀行 및 大企業資本의 金庫業界進出制限

相互信用金庫의 銀行系列化는 다른 金庫에 대하여 경쟁상 不公正의 소지가 있고 銀行貸出資金이相互信用金庫의 창구로 流出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銀行當 1개社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大企業資本의相互信用金庫業界 進出問題에 있어서는 大企業이 資金需要者라는 점에서 볼 때 金庫의 취지와는 달리相互信用金庫가 大企業의 資金調達 窓口化 할 우려가 있으므로相互信用金庫의 持分所有에 대해서도 一定率의 上限 (예를들면 10%) 을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地域主義 및 少額主義의 充實化

相互信用金庫가 기타 金融機關과 구분되는 주요 특징은 地域主義와 少額主義라고 할 수 있다. 地域主義는 원칙적으로 主된 營業所가 있는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자를 来來對象者로 하는 것으로, 현행 越境去來限度規制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相互信用金庫는 원래 零細貯蓄 및 零細資金需要者를 대상으로 한 契金의 受入과 紿付業務를 主로 취급하므로 거래 규모에 있어서 少額主義를 특징으로 하는데,相互信用金庫의 固有 金融서비스領域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少額主義를 固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⑤ 借入金에 의한 資金調達 制限規定 導守

相互信用金庫의 借入金에 의한 資金調達 制限規定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최근 借入金을 貸出金으로 증가하는 방식의 業務取扱比重이 지배적이니 앞으로 發展期에 이르러서는 A級金庫로부터 少額 (예를들면 最高殘額 1,000 만원 이하) 的 預受業務를 허용토록하고 이를 特定地域內 零細商人에 대한 貸出로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V. 結論

金融의 革新과 自律化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一般銀行은 金融附帶서비스開發에 置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變化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金融產業에 있어서도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潮流에 맞추어 銀行의 서비스產業으로서의 발전을 滞害하는 要因을 除去하여야 하는데, 우선 支給手數料·信用狀取扱關聯 手數料等 手數料體系를 정비하여 料率은 競爭에 따라 銀行이 自體의으로 결정하도록 自律化하여야 하는것이다.

한편 非銀行金融機關의 改編問題에 있어서는 金融機關의 安全性과 健全性을 확보하고 金融機關의 顧客 및 投資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同種 또는 異種 金融機關의 競爭 및 補完關係를 절충하여 金融產業의 전반적인 効率性 提高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 ① 孫正植,『金融產業의 業務領域調整』,金融研究 1卷 3號 (1985.12), 全國銀行聯合會金融問題研究所.
- ② 孫正植, 姜柄皓·許榮彬,『金融機關經營論』,博英社, 1986.
- ③ 韓奎善,『金融機關의 財務的 經營理論에 관한 研究』,서울 大學校 大學院, 1987.
- ④ 財務部,『金融貯蓄統計』,1986 및 1987.
- ⑤ 財務部,『財政金融統計』,1986 및 1987.
- ⑥ 全國銀行聯合會,『銀行產業의 効率性分析과 効率化方案』,1985.
- ⑦ 韓國開發研究院,『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研究』,1987.
- ⑧ 韓國開發研究院,『우리 나라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1987.
- ⑨ 韓國銀行,『우리 나라의 金融制度』,1987.
- ⑩ 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1987.
- ⑪ 韓國銀行,『調查統計月報』,1987.

(2) 外國文獻

- Ali, Mukhtar M., and Greenbaum, Stuart I., "A Spatial Model of the Banking Industry," *The Journal of Finance*, Vol. 12, No. 4, September 1977.
- Baltensperger, Ernst,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Theory of the Banking Firm,"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 (1980) 1-37,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Benston, George J., "Bank Examination," *The Bulletin*, New York University, Institute of Finance, Nos. 89-90, May 1973.
- Klein, Michael, A "Theory of the Banking Firm,"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III: 2 (Part 1), May 1971.
- O'Hara, Maureen, A. "Dynamic Theory of the Banking Firm," *The Journal of Finance*, Vol. 18, No. 1, March 1983.
- Santomero, Anthony M., "Modeling the Banking Firm," *The Journal of Finance*, Vol. 18, No. 1, March 1983.